

영등포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2.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05호로 2012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우리 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실정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안 제6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

-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우리 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중 실정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범위에 제6조제1항제8호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 사업”과 동조항제9호에 “외국인주민 한국 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추가 신설함.

-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가족화합을 도모하고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이 향상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